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년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그러나 일부 준수사항에 대한 실효성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현장 수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휴경 농지 관리 방법 확대(현행 제12조제1항제2호 개정)

- 1) 현행 규정 상 휴경지는 연 1회 경운이 의무이나, 경사지 등에서 경운시 토양침식이 심해질 수 있고, 탄소 보존을 위한 무경운 농업이 확대되는 추세 등을 고려하여 다른 관리방법 허용 필요
- 2)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준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휴경하는 경우 연간 1회 이상 경운(耕耘, 논밭을 갈고 김을 맴)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경운 외에도 휴경 농지 관리 방법을 폭넓게 인정하도록 함
- 3) 경운 외 휴경 농지 관리 방안을 확대함으로써 토양보전, 탄소 저감 등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 및 현장 수용성 제고

나.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의무 폐지(현행 별표3제1호라목 삭제 및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개정)

- 1) 준수사항 중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의무 항목은 농업·농촌 공익 기능 증진 효과 측면에서 실효성에 대한 공감대가 낮고, 고령 농업인 등의 부담의 크다는 지적 지속 제기
- 2)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의무를 준수사항에서 제외함으로써 현장 수용성 제고 및 행정비용 절감 등 효과 기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휴경하는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경운(耕耘, 논밭을 갈고 김을 맴)”을 “휴경하는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경운(耕耘, 논밭을 갈고 김을 맴), 잡목 제거 또는 피복식물 식재 등의 방법으로 휴경지를 관리”로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중 “라목”을 “다목”으로 한다.

별표3제1호라목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①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농지의 형상(形狀) 및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제12조(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①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u>휴경하는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경운(耕耘, 논밭을 갈고 김을 맴)할 것</u>	2. ----- <u>휴경하는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경운(耕耘, 논밭을 갈고 김을 맴), 잡목 제거 또는 피복식물 식재 등의 방법으로 휴경지를 관리</u> ----- --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제6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 ----- ----- -----.
1. 법 제17조제2항 · 제3항에 따른 조사 · 수거 및 장부나 서	1. ----- -----

류의 열람(다음 각 목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나. (생 략) 다. 법 제12조제4호 및 별표 3 제1호가목부터 <u>라</u> 목까지 및 마목(농산물의 생산단 계로 한정한다)·바목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로 한정한다)에 따른 준수사항 라. (생 략) 2. ~ 7. (생 략) ②·③ (생 략)	-----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 <u>다</u> 목----- ----- ----- ----- ----- ----- ----- ----- 라. (현행과 같음) 2. ~ 7.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1775